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rigin decision standard and Certificate of Origin Preparation of
Korea-ASEAN FTA

남풍우(Phung-Woo Nam)

강남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무역학전공 교수

최준호(Jun-Ho Choi)

한국관세사회 상임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목 차

- | | |
|--------------------------|----------|
| I. 서 론 | V. 결 론 |
| II. 한·아세안 FTA 현황과 주요 내용 | 참고문헌 |
| III.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결정기준 | Abstract |
| IV.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증명서 작성 | |

Abstract

Origin regulation of Korea-AESAN FTA prescribe by general standard fulfills alteration standards 40% standard or HS 4 units three times regional deputy inflicts, and define in item different place of origin(PSR) about 447 items as the exception. Also, Korea-AESAN FTA except broad principles that decide place of origin in ASEAN FTA accumulation standard, smile standard, place of origin disapproval process standard and directly various repletion standard such as transport principle introduce.

But, most export trader are circumstance judging can charge preferential tariff if export trader submits sending certificate of origin in the customs service without deep comprehension about place of origin regulation.

Therefore, will have to be knowing well place of origin decision standard and creation trick of certificate of origin to receive exactly preferential tariff benefit.

Also, because it can be difficult that all registered customs brokers who is acting for certificate of origin issuance booking get acquainted in place of origin problem, it is expected to can become confrontation plan train FTA and place of origin professional registered customs brokers.

Key Words : Korea-AESAN FTA, Origin decision standard, Certificate of Origin,

I. 서론

최근 국제통상은 양자협상으로의 기조로 변화되는 경향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FTA로 대표되는 양자협상을 통해 세계 각국은 자국 통상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도 한-칠레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EFTA와 FTA가 발효중에 있고, 6월 1일 한-아세안 FTA가 새로이 발효되었다. 또한 금년 4월에는 한-미 FTA가 타결되었으며, EU, 중국, 인도, 캐나다 등과 동시다발적인 FTA 협상이 진행중에 있다(최희인, 2007 : 6).

한-아세안 FTA는 2007년 4월 2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 분쟁해결제도협정 비준안과 일괄 제출된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이하 상품협정) 비준안에 최종 동의하였다. 이번이 국회를 통과한 한-아세안 FTA 3개 협정은 2개월의 협정이행준비 기간을 거쳐 2007년 6월 1일에 정식 발효하였다.

상품협정이 발효하면 원칙적으로 2010년까지 전체품목의 97%에 해당하는 우리 상품의 관세가 철폐 또는 5%이하로 인하되어 인구 5억의 아세안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對아세안 무역흑자가 15억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섬유, 직물, 자동차 및 부품, 기계류, 기타 수송기기, 철강·금속제품의 수출이 늘어 이들 제품에서 對아세안 무역흑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및 관련 품목에 있어서는 승용차 현지조립생산제품(CKD: Completely knocked down)에 대해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로부터 2010년까지 관세철폐를 인정받고, 완성차의 경우도 종류와 국가별로 2010년까지 관세철폐 또는 2016년까지 0~5%로 관세인하를 인정받아, 오랜 현지생산으로 일본 업계가 선점하고 있는 아세안 자동차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해당 품목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협정관세 적용품목 및 세율에 따른 특혜를 인정받으려면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협정별로 또는 FTA 대상 국가별로 다를 수 있고, 정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하여야 수입 통관 후 세관의 원산지심사를 예방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아세안 FTA 발효를 앞두고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에 부적합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에 대비하여 FTA 특혜관세의 혜택을 정확하게 받기 위한 원산지 결정기준과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요령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II. 한-아세안 FTA 현황과 주요 내용

1. 한-아세안 FTA 추진경과

1) 추진배경 및 의의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이 6월 1일부터 한국과 아세안 9개국과의 무역자유화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한-아세안 FTA 발효는 우리나라와 거대 경제권과의 첫 7번째 FTA로서, 우리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정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며, 또한 현재 타결된 한-미 FTA에 이어 EU·중국·일본·인도 등의 거대경제권뿐만 아니라 BRICs등 신흥시장권과의 FTA 추진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체결한 어느 FTA보다 큰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다 주는 본격적인 FTA가 될 것이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 144-146)1). 아세안은 이미 우리의 제4대 수출시장인데다가 잠재력이 매우 큰 인구 5억의 신흥시장일 뿐 아니라, 상당수 아세안 국가가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어 對아세안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아세안 FTA의 가장 큰 특징은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FTA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아세안측과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서 싱가포르-EFTA FTA에 이은 세 번째 성과이며,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해외판로 확보라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결실이라 할 수 있다.

2) 협상 진행경과

한-아세안 FTA는 2003년 8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공동연구 제안 결정이 이루어진 후, 2005년 12월 13일 한-ASEAN 정상회의에서 10개국과 일괄협정을 맺기 위한 최초로 도입한 ‘기본법’ 성격을 갖는 협정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2)에 정식 서명하면서 시작되었다.

2006년 8월 24일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재서명 및 개성공단제품의 특혜관세부여에 대한 이행관련 서한 서명 및 교환이 이루어졌으며, 동 서명에는 “개성공단 제품 특혜관세 부여 이행에 관한 교환각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최종적으로 2007년 4월 2일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국회 비준 동의가 이루어져 상품무역협정 협정문은 2007년 6월 1일부터 발효3)되었고, 투자서비스 협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의하면 한-아세안 FTA로 인해 한국의 실질 GDP와 1인당 후생수준은 각각 0.63%와 0.65% 증가할 것이며, 특히 자동차 및 부품, 화학제품, 철강, 기타 제조업 부문의 국내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2) 기본협정은 한-아세안 FTADML 모범으로 협정의 적용범위 및 그밖의 협정과의 관계,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분쟁해결, 경제협력 등 한국과 아세안 양측이 FTA를 통해 추구하는 목표와 실시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담고 있음.
- 3) 국가별로 국내이행 절차에 차이가 있어 6.1일자로 발효가 확정된 국가는 우리나라, 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 4개국이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4개국은 발효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캄보디아, 라오스 2개국은 국내 이행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점차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2.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

한-아세안 FTA는 단계적으로 교섭·체결되는 ①기본협정, ②분쟁해결협정, ③상품무역협정, ④서비스무역협정, ⑤투자협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협정이 母조약의 성격을 가지며, 나머지 협정들은 기본 협정에 근거하여 체결되고 발효시 한-아세안 FTA를 구성하는 법적 문서의 일부로 편입된다. 이 중 기본협정과 분쟁해결제도협정은 2005년 12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시 서명되었으며, 상품무역협정은 2006년 8월 서명되고, 서비스협정과 투자협정은 현재 협상이 진행중이며, 2007년 12월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품무역협정은 21개 조항으로 구성된 본문과 3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부속서 1, 2는 관세양허에 관한 사항, 부속서 3에는 원산지 및 통관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상품협정 본문에는 내국민대우, 관세 인하 및 철폐, 비관세장벽 및 식물위생조치, 긴급수입제한 조치, 예외적 조치, 개정 등 상품무역 자유화와 관련된 일반규정을 두고 있으며, 일반품목군(Normal Track) 및 민감품목군(Sensitive Track)의 관세 철폐계획, 민감품목군의 양허안, 원산지 관련 일반규정, 품목별 원산지 기준 및 통관절차 등 실질적 내용은 3개 부속서 및 그 부록에 규정되어 있다.

3. 관세양허계획

1) 관세양허 모델리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경우 각 품목별 협상을 통해 상품양허안을 작성하였으나, 한-아세안 FTA 상품양허 협상은 중-아세안 FTA 상품협정을 기본 모델로 삼아 관세인하 및 철폐에 관한 상품자유화방식(Modality)을 정한 후 각 당사국이 자국 품목을 일반품목군 또는 민감품목군에 자율적으로 배치하되, 자국의 관심품목을 상대국의 양허안에 반영토록 협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 기존의 FTA체결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상품협정안은 모든 관세품목을 일반품목군(Normal Track)과 민감품목군(Sensitive Track)으로 분류하고,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관세 품목은 다시 일반민감품목(Sensitive List)과 초민감품목(Highly Sensitive List)으로 구분하여 부속서 1(일반품목군) 및 2(민감품목군)에 규정된 상품자유화방식(modality)에 따라 그 관세를 인하·철폐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품자유화방식은 우리나라와 아세안 6개국⁴⁾에 적용되는 방식과 신규 아세안 회원국인 CLMV(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에 추가적인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적용되는 방식으로 구분되었다.

4)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서명 필요)

(1) 우리나라 및 아세안 6개국의 상품자유화방식

우리나라와 아세안 6개국의 상품자유화방식을 보면, 모든 관세품목의 10% 및 총수입액의 10%를 최대 상한으로 자국의 관세품목을 민감품목군에 배치할 수 있고, 나머지 관세품목들은 모두 일반품목군으로 분류하였다. 민감품목군에 배치한 관세품목은 다시 HS 6단위 품목 200개(또는 각국 관세 최종단위 3% 이하) 및 총수입액 3%를 최대 상한으로 초민감품목에, 그 외의 관세품목은 일반민감품목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유화 목표를 보면, 일반품목군은 2010년까지 모든 관세를 완전 철폐하고, 일반민감품목은 2016년까지 0~5%로 관세를 감축하며, 초민감품목은 양허제외, TRQ⁵⁾ 등 5개 방식을 활용하여 융통성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1>우리나라와 ASEAN 6개국의 상품자유화방식

구 분	일반품목군 (Normal Track)	민감품목군(Sensitive Track)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품목수 기준	90% 이상	6~7%	HS 6단위 200개 또는 각국 관세 최종단위 3% 이하
수입액 기준	90% 이상	7%	3% 이하
자유화 목표	- 2010년까지 완전 철폐 * 단, ASEAN 6개국에게는 5% 내의 관세품목에 대해 2년 의 추가 기간인정(2012년 완 전철폐)	- 2012년까지 20% 로, 2016년까지 0~5%로 관세 감축	- 5개 그룹으로 설정 (A) 관세율 상한 50% 설정 (B) 20%만큼 관세감축 (C) 50%만큼 관세감축 (D) TRQ 설정 (E) 양허제외(40개)

자료 : 관세청, “한-아세안 FTA 발효 및 기업지원전략”, 2007, p.44.

(2) CLMV의 상품자유화방식

신규 아세안 회원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CLMV)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우리나라 및 ASEAN 6개국에 적용되는 방식보다 완화된 상품자유화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민감품목군에 배치할 수 있는 품목수의 상한선과 관련하여, 베트남에 대해서는 품목수 기준 10%는 동일하나, 총수입액 기준 10%는 우리나라로부터의 총수입액 25%로 보다 완화하였고, 캄보디아, 라오

5) 관세율 할당(Tariff Rate Quota : TRQ)이란 일정 물량까지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함. 한편, 한-ASEAN FTA의 경우 TRQ의 운용과 관련하여 최소의무수입물량 및 최소의무수입물량내 관세율 등 TRQ 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준도 정하지 아니하고 각국의 제도에 따라 재량적으로 운용토록 하고 있음.

스, 미얀마(CLM)에 대해서는 품목수 기준 10%만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초민감품목에 배치할 수 있는 품목수 상한선과 관련하여서는 CLMV 모두 총수입액 기준을 적용함이 없이 품목수 기준만을 적용토록 하였다.

관세 감축철폐 시한과 관련하여서도, 일반품목군의 경우 베트남은 2016년, CLM은 2018년까지 모든 관세를 완전 철폐하고, 일반민감품목의 경우 베트남은 2021년, CLM은 2024년까지 0~5%로 관세를 감축하며, 초민감품목의 경우에도 보다 더 많은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표 2-2〉 CLMV의 상품자유화방식

구 분	일반품목군 (Normal Track)	민감품목군(Sensitive Track)	
		일반민감품목	초민감품목
품목수기준	90% 이상	6~7%	HS 6단위 200개 또는 각국 최종단위 3% 이하
수입액기준	베트남 : 75% 이상 CLM : 미설정	미설정	미설정
주요 내용	한국 및 아세안 6개국 적용내용과 동일		
자유화 목표	베트남 : 2016년 원칙 CLM : 2018년 원칙	베트남 : 2021년 CLM : 2024년	

자료 : 관세청, “한-아세안 FTA 발효 및 기업지원전략”, 2007, p.45.

2) 관세철폐 방식

관세철폐 방식은 일반품목군(NT)의 관세철폐 방식과 민감품목군(ST)의 관세철폐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일반품목군의 경우 현행 실행세율(2005.1.1 기준 MFN 세율)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적용하는 협정세율을 협정문 부속서 1에 규정하고 있다.

한국과 아세안 6국가는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는데, 현행 실행세율이 8%이고, 관세감축연도가 2010년인 일반품목의 경우 2007년에는 5%, 2008년에는 3% 2009년에는 0%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며, 베트남과 CLM 국가의 경우 한국 및 아세안 6의 관세철폐 방식과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민감품목군(ST)에 배치된 품목의 관세철폐 방식은 부속서 2에 규정되어 있는데, 민감품목군 중 일반민감품목(Sensitive list)의 경우 한국과 아세안 6은 2012년에 20%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감축한 후 2016년에 0~5%의 세율로 철폐 또는 인하하도록 하였다. 베트남의 경우 2017년에 20%를 정액 감축한 후 2021년에 0~5%의 세율로 철폐 또는 인하된다. 또한 CLM 국가의 경우 2020년에 20%를 정액 감축한 후 2024년까지 0~5%의 세율로 철폐 또는 인하된다.

초민감품목(HSL)은 5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 개별그룹별로 상이한 관세철폐 방식이 적용되는데

품목별로 Group A부터 E까지 나누어져 있다. Group A에 분류된 품목의 경우 50%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의 관세율은 50%이하로 인하하여야 하는데, 한국 및 아세안 6개국은 2016년도에, 베트남은 2021년도에 CLM 국가는 2024년도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Group B에 속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20%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감축하여야 하는데 한국 및 아세안 6개국은 2016년도에, 베트남은 2021년도에, CLM 국가는 2024년도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Group C에 속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50%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감축하여야 하며, 한국 및 아세안 6개국은 2016년도에 베트남은 2021년도에, CLM 국가는 2024년도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김석오, 2007 : 57-58).

4. 우리나라의 상품양허안 내용

우리나라는 관세양허 모델리테에 따라 HS 10단위 기준 총 11,261개 품목중 10,403개 품목(93.2%)을 일반품목군으로 분류하였고, 481개 품목(4.3%)은 일반민감품목으로, 279개 품목(2.5%)은 초민감품목으로, 나머지 98개 품목(0.9%)은 양허에서 제외하였다.

〈표 2-3〉 상품무역협정에 따른 對아세안 관세양허 구조

구 분	양허내용		품목수	비 율
일반품목	관세철폐	2007년 즉시 철폐	7,312	65.5
		2008년 철폐	2,626	23.4
		2010년 철폐	475	4.2
	소 계		10,403	93.2
민감품목	2012년 20% 감축		481	4.3
초민감품목	Group A	2016년 50% 상한	6	0.1
	Group B	2016년 20% 감축	224	2.0
	Group C	2016년 50% 감축	36	0.3
	Group D	TRQ 제공	13	0.1
	Group E	양허제외	98	(0.9)
	소 계		377	2.5
합 계			11,261	100

주 : 품목수는 HS 10단위 기준으로 작성

자료 : 김석오,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관세와 무역」, 제39권 제436호,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7, p.56.

협정문 부속서 1에서는 일반품목군의 구체적 리스트는 규정하지 않았으며, 각 계약당사국이 관세양허 모델리테에 따라 자체적으로 양허세율을 정하고 이를 상호 교환하도록 하여는데, 이에 따라 우리나라

라는 일반품목군 중 커피·자동차회발유·립스틱·타이어 등 7,312개 품목(65.5%)은 협정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참차·미역·석유·인형 등 2616개 품목(23.4%)은 2008년에, 과일주스·스웨터·유아용 의류 등 475개 품목(4.2%)은 2010년에 관세를 철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1) 공산품 분야

한국은 공산품 분야의 對아세안 경쟁력을 바탕으로 공산품 모두를 원칙적으로 아세안측에 개방할 예정이다. 다만, 일부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부품, 전기기계 등 취약품목은 민감품목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반하여 아세안은 수입 비중이 큰 자동차, 철강 분야를 일반품목 또는 민감품목으로 분류하여 개방할 예정이다. 아세안은 현지조립 승용차에 대해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이 2010년까지 관세를 철폐할 계획이며, 완성차·철강의 경우에도 국가별로 2010년까지 관세 철폐하거나 2016년까지 관세를 0~5%로 인하하는 등 전반적으로 중국, 일본과 비교하여 유리한 수준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2) 농수산물 분야

한국은 대다수 민감한 농수산물을 초민감품목으로 반영하여 FTA에 따른 농수산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며, 초민감품목 전체(HS 6단위 기준 200개, HS 10단위 기준 377개)를 농림수산물로만 구성하였다. 농산물의 경우 쌀,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삼겹살), 마늘, 고추, 양파, 감귤 등 58개 품목(HS 10단위)을 양허제외로 분류하였으며, 수산물의 경우에도 국내 수산업계에 영향이 큰 활어류, 신선·가공 수산물 등 39개 품목(HS 10단위)에 대해 양허를 제외하였다.

또한 엄격한 원산지 기준 적용 및 셰이프가드 도입 등을 통해 농산물 수입 급증에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육류·화훼류·채소류·과일류·곡물류 등 신선 농산물은 아세안 역내에서 기르거나 재배한 경우에만 원산지로 인정되며, 도축·혼합·건조·포장 등 단순한 과정은 불인정 공정으로 하여 특혜관세를 배제, 수출시 정부기관 발급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토록 하여 중국·인도·호주 등을 경유한 우회수입이 금지된다.

그리고 FTA에 의한 농산물 수입 급증에 대비한 안전장치로서 셰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양자 셰이프가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WTO 규정상의 글로벌 셰이프가드 발동이 가능하다.

5. 아세안의 상품양허안 내용

태국을 제외한 ASEAN 회원국들의 경우에도, ASEAN 6개국과 CLMV로 구분하여 적용되는 상품자유화방식에 따라 각각 양허안을 작성하였는데, 주요국별로 보면, 말레이시아는 462개(113개), 인도네시아

아는 464개(156개), 필리핀은 350개(93개), 브루나이는 40개(13개)의 품목을 각각 민감품목군(초민감품목)에 배치하였으며, 주로 우리 관심품목인 철강,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을 중심으로 민감품목군(초민감품목)을 구성하고 있다.

Ⅲ.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결정기준

1. 원산지결정기준의 종류

원산지결정의 일반원칙을 세번변경(HS 4단위) 또는 역내부가가치비율 40%이상으로 하고, 예외 품목은 품목별원산지기준안(PSR : Product specific Rule, 총 732개 품목)에 규정하고 있으며, 한·아세안 FTA는 모든 물품에 대해 품목별원산지기준안을 정하는 여타의 FTA와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특혜원산지규정은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3에 규정되었다.

품목별원산지 기준안에는 외국산 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국내에서 생산한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완전생산기준과 특정국가가 아닌 아세안 역내에서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로 인정(농산물에만 해당)하는 역내완전생산기준, 선택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협정에서 지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생산의 일부공정이 FTA 체결국 영역 밖에서 수행된 물품에 대하여도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인 역외가공기준 등이다.

2.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1) 완전생산기준

완전생산기준은 계약당사국에서 재배·수확한 식물성 농산물, 광산에서 채굴한 광산물, 내수면 또는 영해에서 어획 또는 양식한 수산물 등에 적용된다. 그러나 산동물의 경우에는 계약당사국에서 출생·사육된 것에 한하여 특혜관세가 인정⁶⁾되며, 완전생산물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 ① 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채굴한 광물성 물품
- ② 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수확한 식물성 물품
- ③ 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태어나 성장한 살아 있는 동물 및 이들로부터 획득한 물품
- ④ 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렵 또는 딛사냥에 따라 획득한 물품,
- ⑤ 계약당사국의 영해에서 어로 또는 양식에 따라 획득한 물품

6) 역외국에서 수입한 송아지를 사육한 한 때에는 출생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특혜관세 인정대상에서 제외됨.

- ⑥ 계약당사국의 선박(계약당사국에서 등록되고, 계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것)이 영해 밖의 바다에서 채취하거나 포획한 물품
- ⑦ 계약당사국이 영해 밖의 해저를 탐사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계약당사국의 기업(개인을 포함)이 그 영해 밖의 해저나 해저층에서 채취하거나 채굴한 물품
- ⑧ 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생산과정 또는 소비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폐품 또는 원재료의 회수용으로 적합한 것)
- ⑨ 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한 물품으로서 수집하기 전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끝난 것으로서 수리 또는 복구할 수 없는 물품(폐품 또는 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한 물품)
- ⑩ 계약당사국의 기업이 우주에서 취득한 물품
- ⑪ 계약당사국의 영역 또는 계약당사국의 선박에서 상기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물품

2) 2 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2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은 완전생산품 기준 적용 품목을 제외하고 실질변형기준으로 세번변경 기준(HS 4단위 세번변경)과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며, 부가가치 기준은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을 40% 이상으로 규정하고 직접법(Build Up) 또는 공제법(Build Down)은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이 경우 직접법의 역내부가가치 비율은 $VOM^7)/FOB \times 100$ 이며, 공제법의 역내부가가치 비율은 $FOB-VNM^8)/FOB \times 100$ 이다.

예컨대, 중국에서 원단을 수입하여 베트남에서 옷을 만드는 경우에 FTA 특례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르면, 여성용블라우스(HS6106)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첫째, 다른 류에서 6106으로 변경되고, 재단·봉제를 한 물품, 둘째, 부가가치 4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옷감은 면의 경우 52류에 해당하므로 중국산 면직물로 옷을 만드는 경우 류변경 기준은 충족이 되고, 베트남에서 재단·봉제 공정이 이루어지면 베트남산으로 특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는는 물품가격에서 베트남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이면 베트남산으로 한국으로 수출할 경우 특혜를 받을 수 있다.

3) 역외가공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역외가공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은 자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역외국에서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

7) 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말하며, 원산지 재료, 직접 노동비용, 직접 경상비용, 운송비용과 이윤을 포함한 가격

8)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으로, (가) 원료, 부품 또는 상품의 수입시점에서의 CIF가치, 또는 (나) 작업 또는 공정이 발생된 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가 결정되지 않은 재료, 부품 또는 상품에 지불된 가장 이른 시점에 확인된 가격

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이다.

한-아세안 FTA에서도 한-싱 및 한-EFTA FTA와 마찬가지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 제한된 범위 안에서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고, 특혜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⁹⁾.

역외 가공물품의 원산지 기준은 개성공단 생산제품 비원산지재료비가 본선인도가격(FOB)의 40% 이하, 한국산 원부자재의 투입비용이 총비용 대비 60% 이상인 경우에 국내산과 똑같이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중 또는 생산예정인 품목(HS코드 6단위 232개)에 대하여 인정(각국의 개별 목록의 상품수는 HS코드 6단위 100개임)하고 있다.

〈표 3-1〉 역외가공생산품 원산지 기준

구분	원산지 기준
지역제한	개성공단
대상물품	HS 6단위기준 232개 품목 (각국의 개별 목록의 상품수는 HS코드 6단위 100개)
인정요건	비원산지재료가격 40% 이하 + 총재료비중 원산지재료가격 60% 이상
원산지증명서 발급	세관
특례규정	특별세이프가드 도입, 원산지특례조항 철회 근거 규정 도입

자료 : 연구자가 직접 작성

한-아세안 FTA에서 개성공단 인정물품의 개수가 한-싱, EFTA FTA에 비해 축소된 이유는 아세안 회원국들이 자국의 피해를 우려하여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특례인정에 대해서 극히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아세안측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품목은 대상품목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아세안측의 피해우려를 고려하여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對아세안 수출증가시 아세안측의 산업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세이프가드를 인정하고, 협정발효 5년 이후에 아세안측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개성공단 원산지특례조항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토록 하였으며, 아세안측의 원산지검증시에도 세관이 지원하도록 하는 특례규정이 도입되었다.

3.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한-아세안 FTA에서는 원산지를 결정하는 일반원칙 외에도 다른 FTA와 마찬가지로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원산지인정의 미소기준, 원산지불인정공정기준, 직접운송원칙 등의 보완기준이 도입되었다.

9) 한-아세안 FTA에서의 개성공단 인정은 협정문에서는 법적 근거만 마련(부속서 3 제6조)하고, 원산지 인정요건 및 구체적인 대상물품은 양해각서 형태로 규정되었음.

1)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Accumulation)

일방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나 재료가 상대국의 물품에 포함되거나 결합되는 경우 그 물품이나 재료는 상대국이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적용할 때 어느 하나의 계약당사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재료가 다른 계약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생산한 계약당사국을 그 재료의 원산지로 보는 경우이다. 이 경우 물품을 생산한 계약당사국에서 단순작업 이상을 거쳐야 한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에서 TV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TV 완제품을 조립하고, 동 TV 완제품을 말레이시아로 수출할 경우 말레이시아산 TV 부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취급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누적한다. 동 규정은 역내산 원부자재의 역내간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김석오, 2007: 59).

2) 원산지인정의 미소기준(De Minimis)

비원산지 재료가격이 당해물품의 전체가격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미미할 경우에는 원산지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번변경 기준 등 원산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기준을 말한다. 원산지인정의 미소기준은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본선인도가격(FOB)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할 정도로 미소한 수준인 때에는 원산지를 인정하고자 함으로써 세 번변경기준의 엄격성을 보완하고자 한 것이다.

다만, 섬유제품의 경우에는 HS 50 ~ 63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비원산지 섬유재료의 총중량이 모든 섬유재료의 총중량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원산지로 인정한다. 섬유제품의 경우 통상 섬유함량을 기준으로 품목번호가 분류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가격대신 원재료의 중량을 기준으로 미소기준을 적용토록 한 것이며, 단순작업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원산지 불인정공정기준

해당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단순경미한 가공만을 거쳐 4단위 세 번변경요건 또는 40% 이상의 부가가치요건 등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역외산 물품이 약간의 가공작업만을 거쳐 우회수출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가격조작을 통하여 40%이상의 부가가치기준을 쉽게 충족할 수 있는 경우 원산지규정의 허점을 악용하여 손쉽게 관세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불인정공정기준을 도입하였다(한국관세사회, 2006 : 87).

농수산물의 경우 건조·냉동·분쇄·혼합·도축 등의 경미한 가공만 한 경우에도 2단위 또는 4단위의 품목번호가 변경되며, 공산품의 경우에도 소매포장 또는 단순조립만 해도 품목번호가 변경되는 사례가 빈번하며¹⁰⁾, 단순작업(불인정공정) 종류에는 다음과 같다.

- ① 운송이나 저장을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 또는 공정(건조·냉동·냉장 또는 염수장 포함)
- ② 포장·재포장 또는 포장상태를 변경하는 작업
- ③ 세탁·세척 작업 또는 먼지·녹·기름·페인트 등 이물질 제거
- ④ 섬유류 제품에 대한 다림질 또는 압착(壓着)
- ⑤ 단순한 페인트칠 및 광택
- ⑥ 곡물 및 쌀에 대한 외피제거·표백·연마 및 도정 작업
- ⑦ 당류의 착색(着色) 또는 각(角)설탕 작업
- ⑧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脫皮)·씨제거 및 탈각(脫殼)
- ⑨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 ⑩ 체질·선별·구분·분류·등급 및 조화 작업(물품의 세트 구성 포함)
- ⑪ 제품에 대한 단순 혼합(종류가 다른 것과의 혼합 여부 불문)
- ⑫ 완성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분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해하는 작업
- ⑬ 단순한 시험 또는 측정
- ⑭ 살아 있는 동물의 도축
- ⑮ 그 물품이나 그 물품의 포장에 상표·의장·라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시물을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작업

또한 섬유 및 의류에 대한 불인정공정은 제50류 내지 제63류 상품의 원산지 지위 판정의 목적상, 상품은 다음 공정이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자체로만 수행된 경우에는 역내부가가치기준 및 세번변경기준을 포함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불인정 공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 ① 단순 결합 공정, 라벨링, 다림질 또는 프레싱, 세탁 또는 드라이크리닝,
- ② 종회 제단 및 끝단 봉제, 특정 상업 목적으로 의도된 것으로 즉시 식별가능한 직물의 스티칭 또는 오버로킹
- ③ 끈, 밴드, 구슬, 코드, 고리 그리고 아이렛과 같은 장식품을 집고, 누비고, 잇고 부친 트리밍 그리고/또는 결합
- ④ 탈색, 방수, 디케이팅, 줄임, 머서라이징, 또는 단지 최종 공정을 수행할 목적의 유사한 공정
- ⑤ 자수 상품의 전체 면적의 5% 미만에 해당하는 자수 또는 자수 상품의 총 중량 5% 미만에 해당하는 자수

10) 예를 들어, HS 1006호에 분류되는 쌀을 수입하여 HS 1102호에 분류되는 쌀가루를 가공한 경우 HS 2단위가 변경됨. 또한 HS 3003호의 페니실린을 수입하여 소매용으로 포장만 하면 HS 3004호가 변경됨.

4) 직접운송원칙

특혜 관세 대우는 협정의 부속서 요건을 충족하고,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 영역간에 직접 운송된 상품에 적용되며, 상품이 수출 당사국 및 수입 당사국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한다(한국관세사회, 2006: 91).

- ① 그 경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될 것
- ②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
- ③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요구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할 것이다.

IV.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증명서 작성

1.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특혜관세 적용

1) 아세안국가 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한·싱 FTA와 한·아세안 FTA의 싱가포르 수출입 물품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데, 한·싱 FTA('06.3.2)와 한·아세안 FTA('07.6.1)는 별개의 조약으로 각각의 조약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특혜관세를 부여한다. 한·싱 원산지증명서에 따른 수출입 물품에 대해서는 한·싱 FTA상의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에 따른 물품에 대해서는 한·아세안 FTA상의 특혜관세를 부여한다. 따라서 수출입업자가 선택하여 보다 유리한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공정무역과, 2007 : 5).

또한 캄보디아산 물품이 싱가포르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도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원산지 물품이라 하더라도 수출당사국과 수입당사국간 직접운송되는 경우에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제3국을 경유하는 이유가 지리적 혹은 운송상의 이유일 것, 둘째 제3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 셋째,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요구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할 것 등이다.

따라서 싱가포르에서 내수통관된 물품은 캄보디아산으로 특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아세안 국가내에서 내수통관 되었다면 해당 국가의 발급기관에 재수출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O) 발급을 요청하여 발급받으면 우리나라에서 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어느 한 회사가 특정한 선박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어 반드시 중국을 경유하는 경우라면, 단순환적의 경우에만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제3국에서의 송품장

한-아세안 FTA에서는 공장은 베트남에 있고, 본사는 홍콩에 있어 송장은 홍콩에서 발행되도 베트남산으로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다. 즉, 한-아세안 FTA에서는 송품장 발행인과 원산지증명서의 수출자가 달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아세안 FTA에서는 역내교역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원산지 물품인지의 여부가 중요하며, 거래 관행은 문제삼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는 베트남에서 받고, 원산지증명서상에 제3국 송품장란에 표시를 하면 제3국에서 송품장이 발행되었더라도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직접운송요건은 충족을 해야 한다.

3) 동일기관의 상이한 원산지증명서 양식의 특혜관세 적용

라오스는 아세안국가이기도 하지만 아시아태평양(APTA) 양허 대상국가로 똑같이 특혜관세를 적용받지만, FTA와 관세양허협정은 물론 FTA별 또는 관세양허협정 별로도 원산지증명서 양식이 서로 다르므로 특혜관세 적용을 받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특혜관세 적용을 목적으로 작성·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기재항목은 협정별로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원산지증명서를 서로 구분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상단에 각각의 협정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원산지증명서 기재항목, 그 개수 및 기재항목별 증명서 상 위치 등이 협정별로 다소 상이하다.

따라서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상단에 기재된 협정의 명칭만으로 어떤 협정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으며, 해당 협정에서 적용하는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수출자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당해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관련 협정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인지를 확인하게 된다. 또한 동일품목이라 하더라도 각각의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기준은 서로 상이한 경우가 상당수가 있으며,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 양식 및 발급주체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아세안 FTA가 아닌 APTA 원산지증명서 등을 근거로 하여 원산지기준과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할 수가 없다.

4) 원산지증명서의 신청

각 FTA 협정별로 상대국가의 특성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을 달리하고 있으며, 기관발급을 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세관 또는 민간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나, FTA, APTA 협정 체결상대국은 세관, 통상부 등 모두 국가기관에서 발급하고 있으므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한-아세안 FTA에서는 칠레, EFTA와의 협정과는 달리, 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만 유효하다¹¹⁾.

또한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FTA 특례고시 별지 제2호 서식),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를 경우 당해물품이 원산지 물품이라는 증빙서류, 기타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이다. 특히 물품의 직접 생산자가 아닌 수출자의 경우에는 생산자가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출한 서류(원산지통보서) 또는 당해 물품의 생산자, 생산장소, 생산공정 및 거래 계약서 등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객관적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표 4-1〉 FTA별 원산지증명서 발급 제도 비교표

구분	칠레, EFTA	싱가포르, 아세안(상품무역협정발효국)
C/O 발급주체	수출자	세관, 통상부 등 기관

자료 : 연구자가 직접 작성

5) 원산지증명서의 HS 기준

아세안과 우리나라는 HS코드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C/O에 기재하는 HS 기준에 주의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발급기관에서 심사한 후 증명서를 발급하게 된다. 따라서 증명서 발급신청자가 정확하게 기재내용을 작성하여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와의 HS분류체계가 6단위까지만 공통이고 그 이하는 서로 다르다. 또한 2007년에는 HS가 대폭 개정되었으나, 아세안 일부 국가에서는 개정 HS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 작성시 HS는 수입국 기준에 따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출계약하는 경우 미리 계약자와 상의하여 해당국의 HS를 파악한 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¹²⁾.

6)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의 간소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서류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 성실업체 또는 세관에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등록한 업체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만으로 간단하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생산공장 보유업체 지정제도란 해당물품의 생산여부, 제조공정 및 생산물품의 종류 등을 세관에 일괄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세관에서 생산공장 번호를 부여하고, 생산공장 번호가 있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의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11) 한-아세안 FTA의 적용을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다음과 같음(브루나이 : 외교통상부, 캄보디아/미얀마 : 상무부, 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베트남 : 통상부 또는 산업부, 필리핀/싱가포르 : 세관, 한국 : 세관상공회의소(단, 개성공단 생산물품은 세관에서만 발급).

12) 원산지결정기준은 2, 4, 6단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양국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생산공장 보유업체 지정제도는 기관발급을 채택하는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홍콩의 경우에는 공장등록 한 업체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장등록 유무에 따라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간, 제출서류 등에 차이가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아직 동 제도를 채택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업계에게 규제라고 인식될 우려가 있으나, 대외적으로 원산지증명서의 신뢰성을 높이고, 업체입장에서도 서류제출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아세안 국가의 검증요청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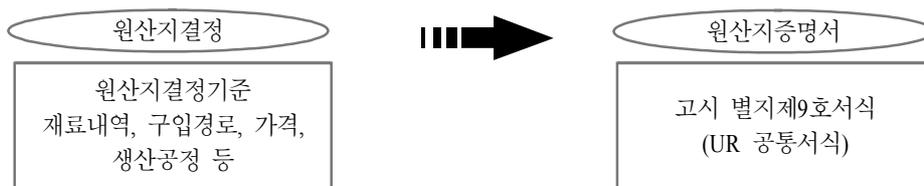
2.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1) 원산지증명서 작성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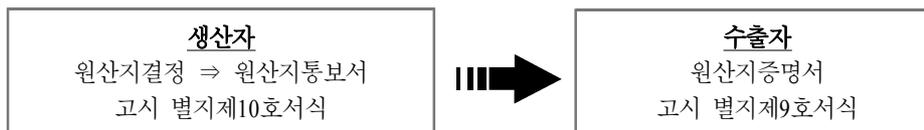
원산지증명방식은 수출국의 세관 등 권한 있는 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발급방식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작성·발급하는 자율발급방식으로 구분되며, 한-아세안 FTA에서는 기관발급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있어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간단하게 발급이 되나,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 통보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FTA관세특례법 제10조(협정관세 적용 신청 등)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작성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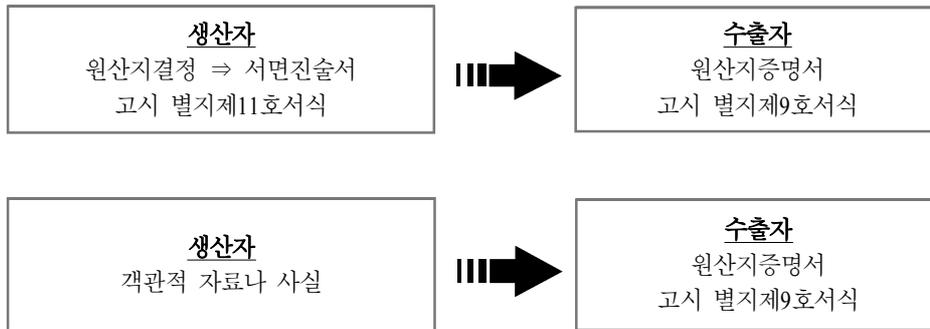
[그림 4-1]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한 경우



[그림 4-2]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



[그림 4-3]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하지 않아 원산지통보서 발급하기 곤란한 경우¹³⁾



2)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한·아세안 FTA에서는 정형화된 원산지증명서 양식(FORM AK)을 사용하며, 원산지증명서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원산지증명서는 1부의 원본과 2부의 부분으로 구성되며, 각 발급장소 또는 발급사무소가 개별적으로 부여한 참조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중간 경우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물품이 그 영역을 통과하는 동안 신청에 의거 Back-to-Back 원산지증명서¹⁴⁾를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관세청, 2007 : 66).

원산지증명서 작성 중에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첫째,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은 "WO"로 기재하여야 하며, 둘째,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원산지 규정) 제4.1조에 따라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당해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역내부가가치비율이 40% 이상 되는 물품은 "CTH" 또는 "RVC 40%"로 기재하여야 한다. 셋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의 경우에 ① 세번변경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은 "CTC", ②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은 "RVC %", ③ 일정 역내부가가치비율을 충족하는 물품(예 : 역내부가가치비율이 45% 이상인 물품)은 "RVC 45%", ④ 세번변경기준과 역내부가가치비율을 동시에 충족하는 물품은 "CTH + RVC 40%", ⑤ 특정 공정을 수행한 물품(예 : 재단 및 봉제공정)은 "Specific Process"와 같은 방법으로 제8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 제6조를 충족하는 물품(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은 "Rule 6"로 기재한다(관세청, 2007 : 69).

또한 제7란의 품명은 해당 물품을 검사하는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재하고, 제조자의 성명 및 상표도 기재하여야 한다. 제7란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번호(HS number)는 수입당

13) 생산자의 휴폐업, 장기부재, 명의변경, 유통단계 구입으로 원산지통보서를 받기 곤란한 경우, 특수관계 또는 주문제작의 경우 수출자가 원산지를 아는 경우(시행령 제9조제1항)

14) Back-to-Back 원산지증명서는 최초 수출 당사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경유하는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발행되는 원산지증명서임.

사국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번호이다.

그리고 제11란의 수출자는 제조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하고,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은 해당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제4란의 해당 항목에 체크(√)하여야 하고, 만약에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3란의 “제3국 송장” 항목에 체크(√)하고, 제7란에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이름 및 국가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의 전시를 위해 수출당사국에서 제3국으로 송부된 물품으로서 제3국에서 전시 중 또는 전시 후에 수입당사국으로의 수입을 위해 판매된 경우에는 제13란의 “전시” 항목에 체크(√)하여야 하며, 연결 원산지 증명서(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인 경우에는 제13란의 “연결 원산지 증명서” 항목에 체크(√)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V. 결 론

우리나라는 이미 칠레, 싱가포르, EFTA와 FTA를 체결해 시행중에 있으며, 6월 1일부터 아세안 9개 국과의 FTA 발효와 더불어, 4월 2일 미국과의 FTA도 어렵게 타결하였다. 또한 캐나다, 중국, 인도, EU와 협상중에 있거나 협상을 진행하여 최대 50여개 국과 FTA를 추진해 간다는 것이 정부방침이다.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 규정은 역내부가가치 40% 기준 또는 HS 4단위 세 번변경기준을 충족할 것을 일반기준으로 규정하고, 그 예외로서 447개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별원산지(PSR)에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아세안 FTA에서는 원산지를 결정하는 일반원칙 이외에 누적기준, 미소기준, 원산지불인정공정기준 및 직접운송원칙 등 다양한 보완기준이 도입되었다.

또한 한-아세안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발급을 기관발급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수입자가 특혜관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출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는 정형화된 원산지증명서 양식(FORM AK)을 사용하며,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국내법령에 따라 수출당사국의 발급기관이 발행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산지결정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따른 특혜사항이 제시되어 있지만 한-아세안 FTA에 따른 특혜세율을 적용 받기 위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절차 및 원산지확인절차 등이 여타 FTA와 다를 뿐만 아니라 복잡난해하여 이를 숙지하지 못한 수출입자의 경우 예측하지 못했던 손해를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수출입자는 원산지규정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수출자가 보내주는 원산지증명서만 세관에 제출하면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한-아세안 FTA 발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인 원산지결정기준 판단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오류 없이 작성하여 수출입기업들이 보다 많은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실질적으로 FTA의 상대국인 아세안 국가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국가가 많지 않다. 이는 한-아세안 FTA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내용을 숙지 하고 있더라도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고자 하는 준비가 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세안 국가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그동안 칠레, 싱가포르, EFTA의 경우를 보더라도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고자 신청한 수출입기업이 80%가 넘는 정도이다.

따라서 특혜관세 혜택을 정확하게 받기 위한 원산지 결정기준과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요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수출입기업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국가마다 다르고 다양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대행하고 있는 모든 관세사가 원산지 문제에 정통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FTA 및 원산지 전문 관세사를 양성하는 것도 대응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관세청, “한-아세안 FTA 발효 및 기업지원전략”, 2007.
- 공정무역과, “한-아세안 FTA 100% 활용 가이드”, 관세청, 2007.
- 김석오,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관세와 무역」, 제39권 제436호, 한국관세 무역개발원, 2007.
- 김한성,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제07-18호, KIEP, 2007.
- 박찬순, 강문성, “한-아세안 FTA에서 서비스무역자유화의 영향 분석”, 「대외경제연구」, 제9권 제1호, KIEP, 2005.
- 외교통상부, “한국의 대 ASEAN 수입관세율 철폐계획(HS code별)”, 2007.5.16
- 최준호, 홍승린, “중국-ASEAN FTA에 따른 관세인하의 영향과 시사점”, 「관세학회지」, 제8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2007.
- 최희인, “FTA 확산에 대응한 관세청 FTA 관세행정 전략”, 「관세와 무역」, 제39권 제439호, 한국관세 무역개발원, 2007.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HS 수출입통관편람”, 2007.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싱가폴 자유무역협정(FTA) 관세특례 법령집”, 2006.
- 한국관세사회, “FTA 특혜관세 업무매뉴얼”, 2006.
- Crawford, Jo-Ann and Roberto V. Fioretino, “The Changing Landscape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 Discussion Paper No.8. WTO, 2005.
- KIEP, Korea-ASEAN Joint Studies Materials, 2004.
- Wattananpruttipaisan, Thitaph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Enterprise Development : Some Policy Issues and Options in ASEAN." *Asia-Pacific Development Journal*, Vol.11, No.1, 2004.
- Simon Romero, "Hemisphere Trade Talks in Miami Are Reported to Hit a Bump," *New York Times*, November 17, 2004.
- Konishi, Hideo & Kowalczyk, Carsten & Sjostrom, Tomas, "Free Trade, Customs Unions, and Transfers". The Fletcher School of Law and Diplomacy, July, 2003
- <http://www.cid.harvard.edu/cidtrade/issues/regionalism.html>, "Regionalism Summary", 2007.4.20.
- http://www.bilaterals.org/article.php3?id_article=7823, "South Korea-ASEAN free trade agreement-minus Thailand-to take effect June 1", 2007.4.9
- http://www.bilaterals.org/article.php3?id_article=6232, "S. Korea To Introduce Import Safeguards For FTA With ASEAN", 2006.10.19.
- http://www.bilaterals.org/article.php3?id_article=5672, "ASEAN countries accept N. Korean park in free trade deal with S. Korea", 2006.8.24